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어르신 안심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년 3월 22일  
행정재경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3월 10일, 이인식 의원
- 나. 회부일자 : 2023년 3월 10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243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임시회 개최 중  
제1차 행정재경위원회(2023년 3월 22일)
  -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이인식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어르신들의 우울감, 무기력증, 만성질환 관리 부재 등 다양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바, 신체적·정신적 질병 예방과 건강의 유지·증진 및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 생활 증진에 이바지하고 건강문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 (안 제1조 및 제2조)
-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3조)
- 안심주치의 지정(안 제4조)
- 지원대상 및 제공범위(안 제5조 및 제6조)
- 실비지원 및 안심주치의 지정해제(안 제8조 및 제9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박병규

나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보건 의료적 취약 계층인 어르신들에게 질 높은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안심주치의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질병 예방, 건강의 유지·증진 등 포괄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하고자
- 「지역보건법」 제11조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
-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일이 사회적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시의 적절하고 바람직한 조례 제정으로 상위 법령과의 저촉 여부 등 특이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